
Policy and Law Report _Vol.10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0.18 ~ 10.24) -

October 25,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21.9.27.) 의결을 통해 신설된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③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점검 등이 있음	2021-10-18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함 동 위원회는 심도 깊은 검토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 [산업 부문]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 ○ [건물/수송 부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	2021-10-18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농축수산 부문]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제안 ②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8년 대비 40%(기존 26.3%)로 대폭 상향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 '18년 269.6백만톤 → '30년 149.9백만톤 (44.4% 감축) ○ [산업 부문] '18년 260.5백만톤 → '30년 222.6백만톤 (14.5% 감축) ○ [건물 부문] '18년 52.1백만톤 → '30년 35.0백만톤 (32.8% 감축) ○ [수송 부문] '18년 98.1백만톤 → '30년 61.0백만톤 (37.8% 감축) ○ [농축수산 부문] '18년 24.7백만톤 → '30년 18.0백만톤 (27.1% 감축) ○ [기타]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을 조성하여 '30년 26.7백만톤을 흡수	
	•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 /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 (산업부) ②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 (산업부) ③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④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 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등이 있음	2021-10-2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구축으로 순환경제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는 재제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함 ‘산업기계 재제조’는 고장이나 성능이 떨어진 노후 기계 부품을 진단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써, 신제품 생산 대비 가격은 50~60% 수준으로 저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어 탄소배출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음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되는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의 발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품질인증 기준과 연계한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제품 품질 신뢰도 향상 ②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원 및 전문가 관계망을 활성화하여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 ③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이 있음	2021-10-2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령」 (2022.4.20. 시행 예정)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가공·생산·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 (안 제2조) ③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2021-10-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④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9조) ⑤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12조) ⑥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13조) ⑦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⑧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 (2021.10.21 시행)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의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021-10-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22.4.20. 시행 예정)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021-10-19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4.20. 시행 예정)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아울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이에 재제조 품목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 제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안 제1조)	2021-10-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③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④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3조 삭제) 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신설) ⑥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의3 신설) ⑦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의4 신설) ⑧ 재제조 품목의 시장출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10.19 시행)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6항 신설)	2021-10-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4.20. 시행 예정)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퍼센트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2021-10-19
방송통신 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2.4.20. 시행 예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 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1호)	2021-10-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③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④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⑥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시행)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 이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10-21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u>」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안 제43조의4 신설) -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안 제51조의6항 신설) -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안 제111조1항 개정)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견제시기간 : 10/21(목)~11/3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제출	2021-10-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 이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 의견제시기간 : 10/22(금)~10/28(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로 제출	2021-10-22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 (안 제11조의3제2항) –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②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에 따른 신고사항 개선 (안 제11조의3제8항) –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신고사항을 개선함 ※ 의견제시기간 : 10/22(금)~1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로 제출	2021-10-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63조)	2021-10-19
기획재정 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플라티늄 · 팔라듐 · 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음. 현행법은 위 귀금속들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년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촉매용 귀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및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 유럽 ·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별표)	2021-10-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운영중임 그런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이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금액을 연간 3천만원에서 연간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안 제16조의4) ③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안 제46조의7제1항) ④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안 부칙 제3조 신설)	2021-10-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u>」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탄소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소 관련 자동차 중심의 활용 부문에 편중된 결과, 수소 활용부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소의 생산·운송 인프라 등이 뒤쳐져 있음 이에 연료전지·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제127조제1항·제2항, 제144조제1항·제2항)	2021-10-19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3인)</u>」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의11 신설)	2021-10-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20년 말 기준 256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20년 말 기준 1,708개)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자가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추적·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등)	2021-10-19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의2 제2항, 안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2021-10-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의결 결과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거나 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4조 및 제175조).	2021-10-2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0/25(월) 10:00	제391회(정기회) 10차 본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0/29(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1호 발간	
국회도서관	10/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6호 발간 -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	
	10/26(화)	「현안, 외국에선?」 제22호 발간 - 일본의 스마트농업	
	10/27(수)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재택근무를 활용한 인재전략·시간관리의 변혁: ‘위드 코로나·단계 II’에서 요구되는 근로방식 개혁	
예산정책처	주중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 분석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0월호 발간 -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등 -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영향요인	
	주중	「NABO Focus」 제36호 발간 - 최근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세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입법조사처	10/29(금) 07:30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 -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 발제: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ZOOM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0/26(화) 14:00	청문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예결위	10/28(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25(월) 14:00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서영교, 이동주 의원실, 민주당 소상공인정책포럼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10/27(수) 07:0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	설훈, 정진석 의원실, 상생과통일포럼 외	CCM빌딩 12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